

企業經營과 特許情報戰略



李 泳 時

(産業研究院 専門委員)

■ 目 次 ■

- I. 머리말
- II. 特許情報의 役割
- III. 特許情報의 調査戰略
- IV. 特許情報의 分析·解釈
- V. 맷는 말

I. 머리말

기업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경쟁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에 버티며 이겨야 기업은 생존이 가능하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남보다 한걸음 빨리 그리고 많이 개발하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또 상품시장경쟁에서의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경쟁·시장경쟁에 승리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의 하나가 특허이다. 이 특허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장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얼마나 어떻게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관리하는가 하는 문제는 오늘날 기업경영전략의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막대한 연구개발자원을 투입하면서 이루어지는 기술개발성과를 특허로서 권리화하여 시장에서의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하고 활용함으로써 기업에 이익을 가져오는 특허의 경제적 효율은 특허관리의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특허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득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모색되고 계속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상당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기술개발경쟁이 날로 치열해짐에 따라 또 특허가 가지는 경영적 메리트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연구개발활동도 경쟁적으로 활성화되고 개발된 기술도 고도화되며 특허출원경향도 커져 이에 따른 특허정보는 양의 증대는 물론 질적 수준도 크게 향상되는 추세이다. 이는 발명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부합은 되지만 특허정보의 비약

적 증대는 반면 그 활용을 어렵게 하고 또 출원특허의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등 이에 따르는 여러가지 제약도 생기고 있다.

또 기술개발경쟁의 격화와 특허에 대한 인식의 향상은 기업에 있어 특허관리부문의 효율화를 요망되고 있다. 적정한 출원평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또 기업에 뜻밖의 큰 손실을 줄지도 모르는 권리분쟁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특허권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여 적극적인 라이센스를 통한 수입의 증대를 꾀하는 자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를 싸고 있는 제반 상황속에서 기업은 기업나름대로의 실정에 적합한 특허관리 전략 내지는 특허정보관리시스템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고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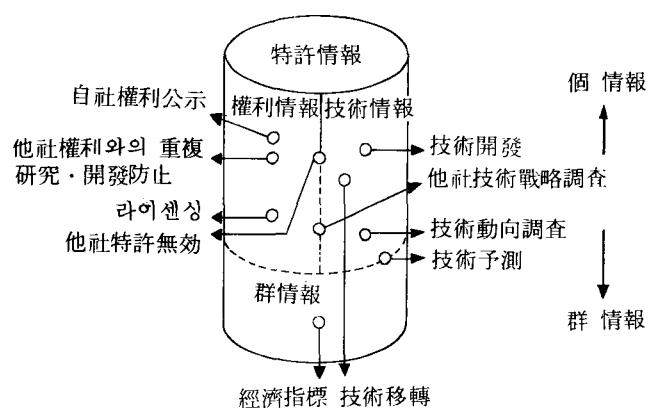
더욱이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제국으로부터 그들의 첨단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자국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물질특허를 포함한 공업소유권의 개방압력이 증대되고 이에 따른 특허의 국가간 분쟁도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은 특허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보다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II. 特許情報의 役割

특허정보는 국가의 특허제도를 바탕으로 발생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특허제도가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즉 신규성이 있고 진보되었고 산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유용한 기술정보적인 기능과 특허제도가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인정해주는 권리정보라는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

기술개발력을 경영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오늘의 기업에 있어서 기술개발테마의 선정으로부터 연구계획의 입안, 기획·개발계획의 책정을 거쳐 경영전략의 전개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특허정보의 역할은 빼어놓을 수 없다. 즉 연구개발에서 제품판매에 이르기까지 기술동향의 파악, 연구개발활동의 효율화, 발명장려, 발명의 유효한 권리화, 장애가 되는 특허의 제거, 자사특허의 홍보, 권리침해의 저발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지만 이같은 기업활동에 있어서 특허정보는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고 활용해야만 한다.

실제로 기업에서는 중요한 특허정보의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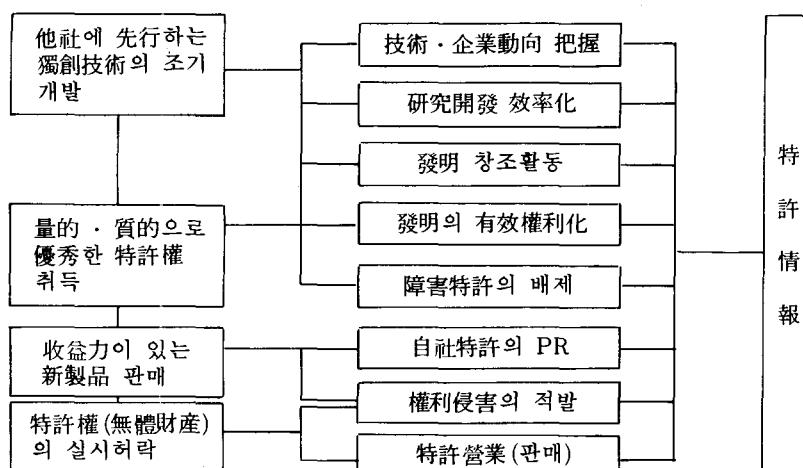
적 활용을 위하여 각각 최적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을 창출·적용해야 한다.

○技術開發과 特許情報

기술개발에 있어 특허정보의 이용패턴은 먼저 특허정보가 옛부터 모든 기술분야에 걸쳐 풍부하게 존재하여 옛날의 특허정보 중에서도 현재와 같은 고도의 기술개발에 있어 신기술의 발굴을 위한 새로운 연구개발테마의 모색시 힌트나 개발도중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기초자료로도 이용된다. 또 이 특허정보는 출원 18개월이면 공개되어 비교적 새로운 정보로 이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동업타사의 특정분야에 있어서의 기술동향이나 기술수준의 현상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셋째로 특허정보의 고도의 분석은 중요기술의 체계적 파악에 매우 중요하여 자사의 기술개발의 가능성이나 다른 분야로의 진출의 여지 등의 검토를 위한

자료가 된다. 또 기술도입이나 제휴의 가능성 을 검토하는데도 긴요하게 활용된다.

사업화결정까지의 기술개발과정에 있어서 특허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4 단계로 나누어 보면 수집단계로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기술개발의 진행상황이나 동향, 기술수준을 파악하는데 활용된다. 출원인 및 발명자의 정보에서 공동연구의 상황이나 발명자인구를 파악할 수 있다. 가공·분석단계에서는 수집된 정보에는 잡다한 내용이 포함되지만 그중에서 중요사항을 추출, 체계화하여 기술개발 가능성 여지의 유무, 기술도입이나 제휴 등의 가능성도 검토 할 수 있다. 결정단계로 자사의 개발여지가 발견되면 그 영역으로 진출을 결정하게 되는 바이 경우 특허정보는 불가결하게 소용된다. 개발진행단계에 있어서도 관련기술분야의 특허조사는 계속되고 타사의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자사의 개발방침을 결정한다.



특허정보의 역할

○ 權利取得過程과 特許情報

자사에서 신기술이 개발된 경우 단순히 願書·明細書를 작성하여 특허출원하는 것만으로는 유효한 권리확보를 바랄 수 없으며 간혹 쓸데 없는 노력과 시간을 소모하는 경우도 있다.

자사가 개발한 신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관련분야에서의 기술수준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에 따라 출원의 가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또한 출원시의 명세서 작성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내용이나 선행기술을 고려함으로써 자기의 권리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 거절되거나 또 반대로 필요이상으로 좁게 잡아 손해보는 경우를 예방하고 보다 강력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더욱이 정보제공이나 異議申清, 無効審判 등에 있어 타사의 특허권을 저지 또는 권리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도 특허정보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 權利活用과 特許情報

기업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권리의 활용의 형태는 대략 세가지로 고려된다. 첫째는 자사에 있어서 독점적으로 그 권리를 실시하고 타사에는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태, 둘째는 라이센스계약에 의거, 타사에서의 실시를 허락하고 그 대가로 로얄티를 받는 형태, 셋째는 자사의 권리를 타사에서의 실시를 허락하는 동시에 타사의 권리의 실시허락을 받을 수 있는 크로스·라이센스를 행하는 형태이다.

기업은 자사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권리의 활용형태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떤 형태가 유리한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타사의 권리상황이나 같은 분야의 특허사정 등의 정보를

충분히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기술개발과정에서 상품화 이후에 이용하는 정보중에서 시장관련정보 못지않게 특허정보가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자사의 기술개발이 타사의 특허에 저촉되어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대체기술의 개발이 거의 절망적이라든가 또는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라이센싱의 교섭을 하는 방법도 있다. 초기에 라이센스를 취득함으로써 중복연구에 따르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다소의 로얄티를 지불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유리한 방법이다.

이런 라이센싱 업무에 있어 특허정보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특허정보를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라이센싱에 대한 필요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자료를 얻고 또 라이센싱 조건의 변경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한 회사의 라이센스를 얻는것 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더욱이 다른 회사의 특허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서도 특허정보를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II. 特許情報의 調査戰略

기업의 효율적인 특허관리활동을 위해서나 또 최신의 진보되고 유용한 기술정보로서 연구개발활동에 활용하기 위해서 특허정보의 조사활동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특허정보를 조사해야 되는 일반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① 기술개발 활동에 있어서 연구개발 테마를 선정하고 연구개발과정에 있어 타인의 특허를 감시하기 위해서 ② 생산·판매활동에 있어서는 저촉되는 특허의 유무를 확인하고 또 저촉특허가 있을 때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

하기 위하여 ③ 기술도입·기술수출·기술교환에 있어서 상대방기술의 수준을 알아내기 위하여 또 제3자의 특허권에 따른 제약이 있는지 유무를 탐색하기 위하여 ④ 특허출원에 있어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기술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공지자료를 찾기 위해 또는 동일한 발명의 유무를 알기 위하여 ⑤ 이의 신청, 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 해당되는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하여 ⑥ 기업경영 전략 수립에 있어서 기술수준, 제품동향, 경쟁기업동향 등의 관련 심층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의 분석·해석용으로 ⑦ 제품의 수출입시 상대국의 특허유무 또는 국내특허유무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각각의 목적에 적합한 조사방법으로 부합되는 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조사활동이 특허정보 업무의 기초가 되고 있다.

반면에 기술경쟁, 특허에 대한 인식도의 향상, 특허출원량의 증대에 따라 매년 발생되고 있는 국내외 특허정보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것도 특허기간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매년 누적되어가고 있다.

이런 방대한 특허정보속에서 조사목적에 부합되는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조사한다는 것은 실로 어렵다.

이런 특허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문제해결에 특허청등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협력사업의 하나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기업에서도 설정에 맞는 특허정보관리시스템을 확립하여 운용함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특허정보가 갖는 양면적인 기능 즉 기술정보·권리정보로서 특허의 조사는 기술조사와 권리조사로서 구별된다.

특허정보를 단순히 기술정보로서 조사하는 경우 일반적인 문헌조사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겠으나 권리조사라는 것은 특허로 된 발명기

술의 법률적 내용을 조사하는 것으로 그 정확도의 여부가 직접 분쟁사건이라는 형태로 경제적 득실과 깊은 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결과 관련 특허의 누락이 있어서는 안되며, 조사주체범위의 한정이 매우 어렵고, 추후까지도 특허의 존재가 전제되기 때문에 조사순서 및 특허존속기간 등의 시간적 요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허조사에서는 전문적인 기술지식은 물론 일반적인 법률지식도 필요하며 각국의 특허제도, 특허분류체계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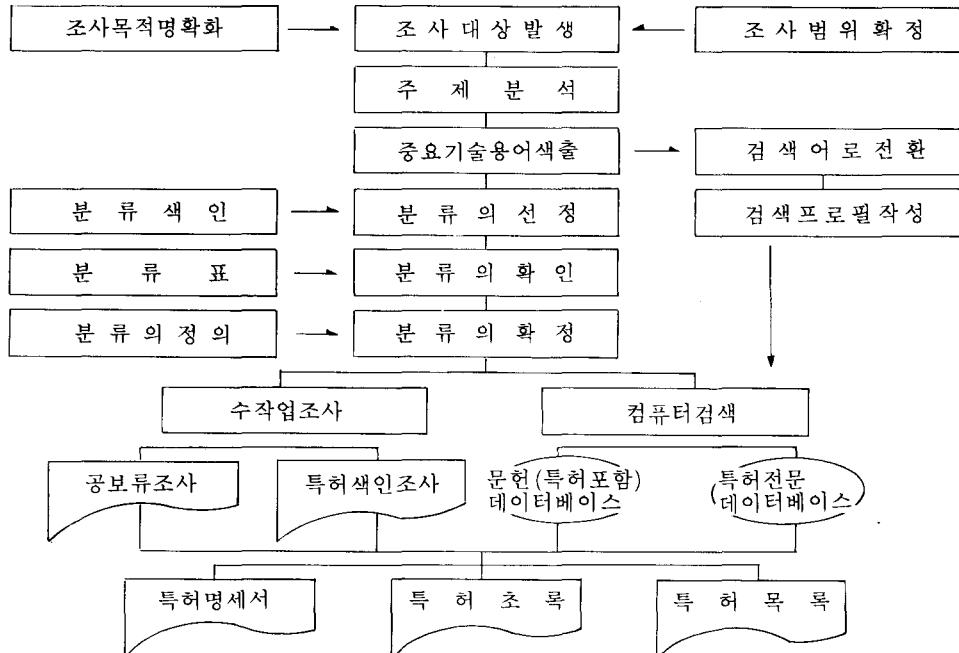
○ 主題에 의한 特許調査

특허조사의 주류를 이루는 것이 특정주제에 대한 관련특허를 조사하는 主題調查이다. 특히 이미 출원되어 있는 과거의 특허를 현재부터 소급하여 조사하는 소급주제조사(Retrospective Search:RS)가 이 주제조사의 대부분이다.

조사하는 방법은 다음 그림과 같다. 주제에 관련되는 특허를 조사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특허분류에 의한 접근이다. 조사하려는 대상기술이 속하는 분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필요하고 지식이 부족하면 불완전조사가 실시되어 조사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

분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상기술로 부터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술용어를 추출하여 이 기술용어에 해당되는 분류를 분류색인(예: 국제특허분류는 분류색인, 미국특허는 Index to Classification)으로부터 찾아내고 위의 찾아낸 분류를 분류표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분류의 상하관계를 조사한다. 분류정의를 참고하여 해당분류를 확정하고 관련 및 경계영역을 확인한다.

확정된 분류를 조사도구로 수작업에 의한 공



特許主題調査의 순서

보류의 조사 또는 색인·목록자료의 조사를 수행하거나 특허전문데이터베이스를 컴퓨터로 검색한다.

한편 최근의 컴퓨터검색시스템의 발전 및 특허전문데이터베이스와 특허정보를 포함하는 일반문헌데이터베이스의 개발 확대로 인하여 위의 분류기호에 의한 검색은 물론 중요용어(key-word)로 검색하거나 또는 분류와 용어를 같이 활용하여 검색하는 방법도 일 반화 되어가고 있다.

○出願人에 의한 特許調査

관심이 있는 기술이나 제품이 문헌이나 샘플, 잡지의 광고 또는 카탈로그, 신문 등에 소개되는 경우 이것이 특허로 보호되고 있는가. 그

렇다면 그 노우하우는 대략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발표자 성명 또 발표자가 속해있는 기업체명 또는 제조업체명을 조사 검색 수단으로 하여 조사할 수 있다.

특히 경쟁기업 또는 기술제휴선의 기술보유 현황 및 기술수준파악, 타사에서 제품출하할 때 관련특허의 확인, 자사제품출하시 경쟁기업의 특허저촉여부 확인을 위해서 출원인에 의한 특허조사가 필요하다.

이때 출원인 특허색인을 조사하고 또는 (및) 관련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면 된다. 이 조사에서 유의할 점은 출원인의 명칭이 과거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경이 없었는가를 확인해야하고 이때 회사편람 등을 이용하면 좋다. 관련회사, 예를 들면 모회사와 계열회사명의 출원도

特許關聯 主要 데이터베이스 概要

D. B. 名	제작기관	해외제공기관	내 容
PATOLIS	JAPATIC	JAPATIC	日本公開特許 1971~
CAAIMS L	IFI / Plenum Data Co.	DIS	美國特許 1950~
USPA	Derwent Inc.	SDC	美國特許 1970~
INPADOC	INPADOC	JAPATIC	50個國 + 2 國際機關特許
INPI-1	佛工業所有權廳	QUESTEL	프랑스特許 1969~
INPI-2	EPO	QUESTEL	EPO特許 1978~
PATDATA	BRS	BRS	美國特許 1975~
WPI*	Derwent Inc.	SDC	24個國 + 2 國際機關特許 1963~
APIPAT	CAIS,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SDC	10個國 石油關連特許
CS SEARCH*	Chemical Abstract Service	CAS, DIS SDC, BRS	化學關聯文獻 · 特許
INSPEC*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DIS, SDC BRS	物理, 電子工學 等 文獻 · 特許

*는 산업연구원(KIET) 도입, 활용중임.

주의하고 회사명이 아닌 개인명으로 출원하는 경우도 있다. 각국의 특허색인을 참고하면 효율적이고 이 경우 명칭의 표기법에도 유의해야 한다.

○對應特許調查 (Patent family Search)

기술이나 제품을 수출할 때 문제가 되고 있는 특허가 출원되어 있는 국가를 알고자 할 때, 국내에서 기업화를 위해 외국의 해당특허가 국내에 출원되어 있는가를 알고자 할 때, 특허성(신규성)조사 및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외국의 심사결과 및 확정된 권리범위를 알고자 할 때, 해득하기 어려운 언어로 된 외국특허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할 때 특정국가의 특허와 동일한 내용의 특허가 어느 나라에도 출원되어 있는가를 조사하는 작업이다.

이 조사에는 INPADOC 및 DERWENT 등 특허정보 전문기관에서 발간하는 자료 또는 데

이터베이스를 이용하면 된다.

○最新情報의 調査 (Current Awareness)

자사에 관련있는 최신특허를 계속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監視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진행중인 연구개발과제에 관련되는 특허출원을 발견하면 적절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자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제품에 관련있는 최신의 특허를 조사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힌트를 얻을 수 있고, 기술이나 제품의 최신의 움직임도 파악되어 연구개발의 방향설정 및 진행을 콘트롤할 수 있고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기술평가력의 향상도 기대할 수도 있다.

이 조사는 공개·공고공보 그대로를 관련부서에 배포·열람시키는 방법과 다소의 시간적 차이가 있더라도 외부정보서비스기관에서 발간하는 각종 색인지, 초록지, 목록지 등을 수집·

열람하는 방법 또 외부정보서비스기관의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여 특정주제 관련의 최신톤허를 매달 정기적으로 받아보거나, 온·라인 터미널을 설치하여 최신톤허조사는 물론 소급주제 조사에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비용이 들지만 더 확실한 방법으로는 현지 대리인을 통한 감시조사서비스(Permanent Watching Service)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IV. 特許情報의 分析·解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허정보를 통하여 경쟁기업, 동종기업 나아가 산업사회 전체의 기술동향 파악이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개발영역이나 과제의 창출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특허정보를 단순히 정리·가공하여 다음 필요시 조사하기 쉽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발전된 특허정보의 이용방안으로서 관련특허를 분석하고 종합하고 해석하는 고도의 특허정보가공업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관련있는 특허를 망라적으로 조사·수집하고 수집된 특허를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기업의 동향, 기술개발동향, 기술수준의 현황, 기술개발력의 평가, 기술의 발전과정 및 장래예측, 개발기술의 관련산업에의 파급효과, 기술개발의 공백지대 파악에 따른 새로운 영역 및 과제의 발굴 등 심층의 기업전략정보 등을 얻을 수 있다.

특허의 고도가공하는 종종의 분석기법을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1) 定量的 分析

정량적 분석은 주로 출원건수나 권리수 등의 수량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예측하는데 이용하는 방법.

① 出願件數의 時系列分析

○기업비교：주요기업별의 특허출원이나 공고건수의 추이를 세로축에 건수, 가로축에 年度를 표시하여 그라프화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력을 비교한다.

○기업동향：어떤 기업의 특정한 특허 분류에서의 특허취득 건수의 시간적 추이를 그라프화하여 그 기업의 그 분야에의 참여와 철수등의 동향을 조사한다.

○기술변천：어떤 기술이 발전되어 변화하고 있는 형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가로축에 년도를 세로축으로 각 기술의 발전된 형태별의 공고건수를 표시한다.

○二山分析：어떤 상품에 대하여 출원인별 출원수의 추이를 비교하여 기술격차나 기술의 보급도를 파악하는데 쓰인다.

○뉴엔트리分析：어떤 기업이 어떤 분류에 출원하고 있는가를 분류별로 출원건수에서 파악한다. 그래서 이 시간적 추이를 감시함으로써 새로운 분야에의 참여의 조짐을 탐지한다.

② 新技術係數分析

세로축으로 특허분류의 각 분야에 있어 출원건수를, 가로축에는 특허와 실용신안의 출원건수 비율을 표시하여 左上으로 갈수록 기술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나타낸다. 이 그라프위의 위치의 시간적 추이가 좌상방향으로 움직이면 기술이 발전하는 형태이고 右下쪽으로 움직이면 기술은 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三角分析

특허·실용신안, 의장, 상표등 세가지를 요소로 한 3각 그라프를 작성, 어느 분야, 상품에 관한 3요소에 관계된 출원수, 권리수 등의 시간적 추이로부터 기술개발의 사이클이 파악된다. 통상 기술이 성숙해지면 특허(기술) → 의장(디자인) → 상표(브랜드)의 순으로 의존하는 권리가 추이된다.

④ 기술내용별 権利取得數의 分析

어떤 시점에서의 어느 기업이나 나라에 대하여의 분류마다의 특허·설용신안권의 보유수를 보고, 분류상의 집중도를 조사한다. 이것이 의하여 각기업 또는 각나라의 개발의 집중도 즉 개발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

⑤ 파세트分析 (Facet)

특허출원을 기술적으로 두개의 차원에서 비교하여 그 시간적 변화를 파악한다. 국가별 비교 또는 기업비교에 의하여 기술개발의 동향이 파악되고 기술변화의 조짐을 알 수 있다.

(2) 定性的 分析

정성적 분석은 출원의 기술내용에 차안하여 질적인 면에서 그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기술동향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정성적 분석에는 주로 다음과 같으나 이들의 결과를 표로 작성하여 자사와 경쟁회사의 비교가 가능하고 기술개발의 여지를 발견할 수 있는 特許地圖 (patent map) 이다.

① 기술의 흐름도 분석 (技術發展圖)

시계열적으로 주목해야 할 주요 특허의 흐름을 학습한다. 이것에 의하여 과거의 기술의 흐름, 장래의 예측, 각기업의 기술개발방향이나 特許網, 당해기술의 관련산업에의 파급 등을 파악할 수 있다.

② 波及分析

어떤 기술자체의 발전과 이 기술의 응용분야에서의 발전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③ 매트릭스 分析

가로축과 세로축에 각각 다른 요소를 표시하고 매트릭스의 형태로 기술을 정리한다. 이 분석에서 기술개발의 여지가 어디에 있는가 또는 발전의 방향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한쪽의 축을 시간축으로 잡으면 기술의 흐름분석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고 출원인과 기술요소를 각각 세로축으로 함으로써 그 기업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④ TEMPEST 分析

일종의 파세트분류의 일종인데 어떤 사항을 Personality, energy, space, time, material 등의 관점에서 분해한다. 기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Personality는 용도, energy는 구동원리, 화학반응, 변환원리 등, space는 조립구조, 문자구조 등, time은 제조법, 제어법 등, material은 구성재료, 원료, 촉매 등과 같이 사용한다. 이 분석에 의하여 종래와는 다른 기술의 출현이나 개발의 공백지대를 발견할 수 있다.

또다른 분석패턴은 특허정보를 다른 형태의 정보, 즉 신문정보, 잡지문헌정보, 카탈로그정보와 조합시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 정보활동의 전개도 연구 검토되어야 한다.

V. 맷 는 말

향후 지적소유권의 개방, 기술도입 자유화, 수입자유화 등 우리 경제의 대외개방은 확대되고 우리 기업의 상품·기술·자본의 해외진출도 역시 증대될 전망이고 첨단기술을 비롯한 특허분쟁이 국가간 또는 기업간 치열해질 것은 확실하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특허가 기업활동에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져가고 따라서 이 특허를 얼마나 어떻게 능률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특허가 가지는 경제적 효능을 극대화시키는가 하는 특허관리는 기업전략의 중요한 한부분이다.

이 특허관리에 있어서도 핵심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허정보이고 이들의 관리문제는 특허관리의 관건이 되고 있다.

특허정보는 물론 신규성의, 진보성의, 산업적 이용가치가 높은 유용한 기술정보로서 또 국가의 특허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는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는 기술이나 제품의 권리정보로

서 기능할뿐 아니라 기업 또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허의 숫자는 기술개발력의 평가기준으로 나아가 산업정책 정보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특허정보는 국내외적으로 그 발생량이 급증하고 질적수준도 심화되며 또 기업경영에서의 특허정보에 대한 요구도 다양하게 또 높은 수준으로 증대되고 있다.

방대한 특허정보중에서 기업에 유용하고 필수적인 정보를 조사하고 수집하여 또 이들을 정리·가공·축적시키고 기업내 필요부문에 유통이 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또 특허정보를 분석하고 종합하며 해석하여 기업경영에 기본적인 전략정보로서 창출해내는 특허정보전략 또한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이러한 기업의 특허정보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첫째, 특허관리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해야하고 적어도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특허정보의 관리를 기업전략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전담부서 내지는 전담요원을 두어 전문화 시켜야 한다.

둘째, 특허관리자를 기업스스로 양성해야 한다. 특허정보의 양면적 기능으로 인하여 특허전문가는 기술적 지식과 아울러 법률적 지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 우수한 특허관리자는 최소한 우리나라 특허법과 외국의 특허제도에 대한 이해, 정보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 자사제품에 대한 기술적 지식과 판매에 관련된 감각등을 고루게 갖추어야 한다. 외부의 교육을 통하여, 나아가 해외연수를 통하여 특허관리에 관련된 지식과 능력을 길러주고, 오랜 근무를 통

하여 경험을 쌓도록 하여 특허전문가로 양성해야 한다.

셋째, 관련있는 특허를 조사하고 수집하며 이를 가공·정리·축적·유통시킬 수 있는 특허정보관리시스템을 기업실정에 부합되도록 확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특허정보는 기업경영의 각 부문으로부터 요구되며 그 요구도 수시로 또는 지속적으로, 어떤 경우는 최신의 정보를 또는 과거의 정보를 어떤 경우에는 빠짐없이, 그것도 신속하고 정확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한 다양한 정보요구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넷째, 가능하면 특허정보를 분석·해석하여 特許地圖(Patent map)를 작성, 기업경영 전략정보를 창출하는 쪽으로 업무를 발전시켜야 한다.

다섯째, 외부특허 관련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외부기관으로 특허청, 변리사 사무소, 정보서비스기관(산업연구원, 한국데이터통신등), 협회·조합등 관련경제단체들이 있는데 이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정보와 전문인력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특히 산업연구원의 특허정보서비스 활용이 바람직하다. 최실태리를 알려주는 목록자료로 「외국특허속보」를 배포하고, 특허조사업무를 대행해 주고 특히 세계적인 특허전문데이터베이스인 WPI를 도입, 온라인으로 기업체에서 세계특허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특허관리 내지는 특허정보관리는 전사적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관리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망되고, 전직원에 대한 특허교육, 특허에 따른 보상제도 등을 통한 인식도를 높혀주어야 할 것이다.

한미통 한뜻으로 간첩신고 나라사랑